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본 규칙안은 2021년 11월 23일 심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21년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칙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 나. 「평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 다.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의회 규칙과 관련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회의규칙 위임사항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시 조례특위 심의 사항”임을 신설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록표결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표결방법을 기존 “기립 또는 거수”에서 “기명 또는 호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장·부의장 선거, 자격상실 의결, 징계의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참고자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